

창원 석전 보람 아름채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bo ram 보람종합건설(주)

임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brcon.co.kr)를 통해서 확인할실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15년 04월 16일(목)입니다.
- 인채물은 건본주택(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38-4)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창원시는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지역입니다.(전매제한 없음)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2015.02.27.)이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규정의 개정(2013.05.31)에 의거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의 경우 가점제 적용비율이 40%로 낮아졌습니다.
- 2009년4월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계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음을 유념하여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07년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으로 “주거기간, 분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이며,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2012년9월2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 본 아파트는 2012년2월2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공급지역을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자 및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중 주택공급신청시 3층(본 아파트는 1층-필로티, 2층은 오피스텔로 구성된 주상복합아파트)의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창원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1년9월1일 이후부터는 2순위 청약도 금융결제원 인터넷청약시스템 APT2you(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창원 석전동 보람 아름채 아파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창원시 건축경관과 - (2015.04.15.)호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38-4

☐ 공급규모: 지하 2층~지상 15층 총 아파트(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대지면적: 1,016.20㎡ (공동주택: 894.4516㎡ 오피스텔: 121.7484㎡)

☐ 공급대상

구 분	주택관리번호	주택type	주 택 형(㎡)	세대수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포함)	계약면적(㎡)	대지지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 계			
민 영 주 택	2015000315-01	59A	59.7318㎡	26	59.7318	23.3415	83.0733	16.8599	99.9332	18.1383
	2015000315-02	59B1	59.8269㎡	6	59.8269	23.3093	83.1362	16.8869	100.0231	18.1672
	2015000315-03	57B2	57.8776㎡	1	57.8776	22.1489	80.0265	16.3365	96.3630	17.5752
	2015000315-04	54B3	54.9177㎡	1	54.9177	21.6960	76.6137	15.5010	92.1147	16.6764
	2015000315-05	59C1	59.7632㎡	6	59.7632	22.2118	81.9750	16.8687	98.8437	18.1478
	2015000315-06	51C2	51.6074㎡	1	51.6074	19.8152	71.4226	14.5666	85.9892	15.6712
	2015000315-07	41C3	41.2118㎡	1	41.2118	16.2329	57.4447	11.6324	69.0771	12.5144
	2015000315-08	59D1	59.9427㎡	6	59.9427	23.7527	83.6954	16.9195	100.6149	18.2023
	2015000315-09	57D2	57.2227㎡	1	57.2227	23.0556	80.2783	16.1517	96.4300	17.3763
	2015000315-10	52D3	52.4878㎡	1	52.4878	21.2543	73.7421	14.8152	88.5573	15.9385

☐ 공급대금 및 납부일정

(단위:㎡, 천원, VAT포함)

주택 type	주택형	공급 세대	층구분	세대 수	총공급대금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잔금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59A	59.7318㎡	26	3층	2	36,123	154,857	190,980	19,098	57,294	57,294	57,294
			4층	2	36,123	157,367	193,490	19,349	58,047	58,047	58,047
			5층	2	36,123	159,887	196,010	19,601	58,803	58,803	58,803
			6~8층	6	36,123	162,397	198,520	19,852	59,556	59,556	59,556
			9층	2	36,123	162,397	198,520	19,852	59,556	59,556	59,556
			10층	2	36,123	162,397	198,520	19,852	59,556	59,556	59,556
			11~15층	10	36,123	163,657	199,780	19,978	59,934	59,934	59,934
59B1	59.8269㎡	6	3층	1	36,181	156,199	192,380	19,238	57,714	57,714	57,714
			4층	1	36,181	158,719	194,900	19,490	58,470	58,470	58,470
			5층	1	36,181	161,229	197,410	19,741	59,223	59,223	59,223
			6~8층	3	36,181	163,749	199,930	19,993	59,979	59,979	59,979
57B2	57.8776㎡	1	9층	1	35,002	153,818	188,820	18,882	56,646	56,646	56,646
54B3	54.9177㎡	1	10층	1	33,212	145,238	178,450	17,845	53,535	53,535	53,535
59C1	59.7632㎡	6	3층	1	36,142	137,438	173,580	17,358	52,074	52,074	52,074
			4층	1	36,142	139,918	176,060	17,606	52,818	52,818	52,818
			5층	1	36,142	142,398	178,540	17,854	53,562	53,562	53,562
			6~8층	3	36,142	144,878	181,020	18,102	54,306	54,306	54,306
51C2	51.6074㎡	1	9층	1	31,210	132,990	164,200	16,420	49,260	49,260	49,260
41C3	41.2118㎡	1	10층	1	24,923	114,087	139,010	13,901	41,703	41,703	41,703
59D1	59.9427㎡	6	3층	1	36,251	147,299	183,550	18,355	55,065	55,065	55,065
			4층	1	36,251	149,829	186,080	18,608	55,824	55,824	55,824
			5층	1	36,251	152,359	188,610	18,861	56,583	56,583	56,583
			6~8층	3	36,251	154,899	191,150	19,115	57,345	57,345	57,345
57D2	57.2227㎡	1	9층	1	34,606	152,374	186,980	18,698	56,094	56,094	56,094
52D3	52.4878㎡	1	10층	1	31,742	140,018	171,760	17,176	51,528	51,528	51,52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4항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고상(청약시)주택형	59.7318㎡	59.8269㎡	57.8776㎡	54.9177㎡	59.7632㎡	51.6074㎡	41.2118㎡	59.9427㎡	57.2227㎡	52.4878㎡
약식표기(type)	59A	59B1	57B2	54B3	59C1	51C2	41C3	59D1	57D2	52D3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은 약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대금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이며,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아파트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상기 공급대금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소조정 등으로 등기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대금에 포함되어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공급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고,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 없음.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이상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주택type	주택형	확장위치	비 고
59A	59.7318㎡	거실, 침실2, 주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6항 5의2, 5의3, 5의4에 의거하여 본 건 분양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분양되며 발코니 확장에 대한 입주자의 별도 부담은 없음.(외부 발코니 창호 무료)
59B1	59.8269㎡	거실, 침실1, 침실3, 주방	
57B2	57.8776㎡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	
54B3	54.9177㎡	거실, 침실1, 주방	
59C1	59.7632㎡	침실2	
51C2	51.6074㎡	거실, 침실1	
41C3	41.2118㎡	거실, 침실2	
59D1	59.9427㎡	거실, 침실2, 침실3, 주방	
57D2	57.2227㎡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	
52D3	52.4878㎡	거실, 침실1, 침실2, 주방	

- 발코니 확장 창호의 경우 세대별, 층별, 위치별 창호규격 및 사양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실내습도, 생활습관 등에 따라 발코니창호, 기타부위 등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의 이의제기를 사업주체에게 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마감자재의 품목 및 품질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 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 선정 발표시 동·호수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수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함.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바닥재	강마루, 타일, 갈레밭이, 현관바닥재, 현관디딤판, 발코니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초배지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가변형벽체	석고보드 마감, 단열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발코니벽도장
천정	천정지(초배지포함),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반자동림(몰딩포함)	천정을 위 석고보드 마감,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문	목재문(문짝, 문틀, 상부덧판, 문선), 창호철물일체(도어록, 경첩 등), 디지털도어록	발코니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등), 수전류, 액세서리, 천정재(천정틀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현, 욕실바닥 및 벽타일	조적, 방수, 미장, 전기설비 배관/배선
주방가구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수전 주방가전일체(가스쿠포, 주방액정TV, 렌지후드 등)	소방검사 관련 후드 및 주방배기덕트
일반가구	신발장, 드레스룸장, 파우더장, 반침장, 수납선반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등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천원, VAT포함)

주택type	59A	59B1	57B2	54B3	59C1	51C2	41C3	59D1	57D2	52D3
주택형(㎡)	59.7318㎡	59.8269㎡	57.8776㎡	54.9177㎡	59.7632㎡	51.6074㎡	41.2118㎡	59.9427㎡	57.2227㎡	52.4878㎡
기본선택(마이너스옵션)	17,694	18,792	18,089	17,318	18,530	16,145	12,985	18,919	18,146	16,669
※상기 금액은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임.										

- 마이너스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준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 잔금 납부 후 시공이 가능함.
 - 상기 마이너스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 옵션은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마이너스옵션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자재수급,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계약체결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 신청이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관계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의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입주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일정 유념하시어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 법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가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공사에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제공되지 않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회차별 공급대금 납입비용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옵션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계약시에는 계약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시공, 설치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공통사항

- 신청 및 당첨자 추첨 일시 및 장소

구 분	신청일시	당첨자 선정 및 공고일시	추첨 및 당첨자발표 장소
①일반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2015년 04월 21일(화) 10:00~14:00	2015년 04월 22일(수) 14:00	당사 현정내 건본주택
②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③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④노부모부양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 신청방법 :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당사 건본주택에서 청약신청하여야 함.
- 계약체결일 : 2015.05.06(수) ~ 2015.05.08(금) (3일간, 각 순위 정당한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 당첨자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2항에 해당되는 일반 특별공급의 경우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제19조 6항에 해당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19조 7항에 해당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9조 13항에 해당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각 조항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함.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불가, 입주자저축 효력상실 및 재사용불가)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된 경우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된 것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로 하고,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에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됨.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4항에 의거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업무중 동·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의뢰하여야 함에 따라 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의 동·호수가 자동 배정됨.
 - 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의 동·호수가 자동 배정됨에 따라 당사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참조.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2항 1호, 2호 및 3호(1항 7호에 해당하는 부분)를 제외한다)
단, 신청자는 각 청약통장별 신청 가능 전용면적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형에 대하여만 청약할 수 있음.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의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 청약부금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지역별, 면적별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하고 신청일까지 신청가능 면적을 선택한 자
- 청약통장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구 분	창원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거주자
85㎡이하 (전용면적 기준)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102㎡이하 (전용면적 기준)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135㎡이하 (전용면적 기준)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① 일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2항)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2항에 해당하는 자(철거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8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군인)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구성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구성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세대주 및 세대구성원)]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분
 -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남북피해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전가족이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이전으로 전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자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내인 자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구 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 올림픽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국제대학스포츠연맹·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 선수 및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나. 외국인 투자의 촉진
 - 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중 귀국일부터 2년이내인 자로서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기관에서 인정서류를 발급 받은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②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6항)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구성원]인 자로서 민법상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두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4항에서 정하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급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함(단, 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6항의 규정에 의한 당첨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가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과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양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로 처리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자녀수가 같을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기준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 기간 (4)	20	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사도 거주 기간 (5)	20	10년 이상	20	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사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미만	15	
		1년이상 ~ 5년미만	1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년 미만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 일 기준으로 산정
		10년 이상	5	

유의 사항

- (1) (2)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을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기준: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③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7항)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고, 출산은 주민등록등분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임)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인 자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4항에서 정하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자(자녀를 입양한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됨)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산증명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단, 재혼한 경우 출산자녀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 3항))
 - ※ 소득기준 :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한다) 이하여야 함(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전년도(2014년도) 소득기준

구 분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청 발표)		
	3인이하	4인	5인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4,734,603원	5,224,645원	5,560,026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681,524원	6,269,574원	6,672,031원

- ※ 출산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임양신고일이 적용됨.
-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신청[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수대로 가구원으로 산정]
-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의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며,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간주하고, 더불어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 19세 이상 직계존비속의 소득도 합산함.
-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는 신청 불가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이라 함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증상의 총급여액을,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 신혼부부 주택의 거주지역요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선정방법

-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가)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나)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단, 재혼의 경우 전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충족함.
- 상기 각호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함
 - 나)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다)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자녀수를 산정할 때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소득입증 구비서류

구분	세부내역			
소득입증 서류목록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징구)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회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당사견본주택비치)	* 접수장소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④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3항)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정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와 점수가 청약자 본인의 기재 오류 등으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 가점제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식에 의함.

■ 특별공급 세대수

주택형(㎡)	59.7318㎡	59.8269㎡	57.8776㎡	54.9177㎡	59.7632㎡	51.6074㎡	41.2118㎡	59.9427㎡	57.2227㎡	52.4878㎡	소계
일반 특별공급(10%이내)	2	1	-	-	1	-	-	1	-	-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10%이내)	2	1	-	-	1	-	-	1	-	-	5
신혼부부 특별공급(10%이내)	2	1	-	-	1	-	-	1	-	-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3%이내)	1	-	-	-	-	-	-	-	-	-	1
합 계	7	3	-	-	3	-	-	3	-	-	16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특별공급 공통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1통 (주택공급 신청용) 인감도장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의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통장가입(순위)확인서 (청약통장가입 해당은행 또는 금융결제원[www.ap2you.com]에서 발급가능, 철거민,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 제외)
	일반 특별공급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외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팔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외 • 배정기준표(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자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동안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 입양 입증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관계 증명서 등) •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에 한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외 • 혼인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접수장소에 비치) • 입양입증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관계 증명서)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소득증빙서류(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포함) ↳상기 [소득입증 구비서류] 참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외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본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동안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접수장소 비치)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및 대리신청자의 도장 	

※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출명세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일반공급

■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창원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한 주택에 대하여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함.)
-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적은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차액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길 바람.
 [단, 착오기재를 소명하여 부적격자 중 소명자로 통보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 중 청약자격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받은 자는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 또는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 제한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비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하는 민영주택에 한해서는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구분	창원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거주자
85㎡이하 (전용면적 기준)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102㎡이하 (전용면적 기준)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135㎡이하 (전용면적 기준)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제 따라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신청자격	거주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인영주택	공통	-85㎡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창원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2015.04.23 (목요일)	• 전은행 청약통장가입자 www.ap12you.com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www.kbstar.com (국민은행 홈페이지) • 접수시간: 08:00 ~ 17:30	· 일시: 2015.04.30 (목요일) · 장소: 현장건본주택 및 홈페이지 (www.changpo-metrocity.co.kr)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12you.com) ※당첨자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으로 인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신청할 주택형의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신청할 주택형의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신청시 모두 가점제로 접수하고 본인 및 세대원이 2주택 이상 소유시 주택소유수에 따라 감점적용				
	2순위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추첨제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접수중이라도 접수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청약신청시 인터넷청약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청약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노약자, 장애우 청약가능시간 : 09:00~16:00]

■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94.8.15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청약가점제 및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

- 청약 가점제 관련 유의사항
 -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1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17점)등 총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가점제수 산정기준표

구분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 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② 부양가족수	35	0명 (가입자본인)	5	4 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 명	10	5 명	30	
		2 명	15	6 명	35	
		3 명	20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 점			84점 만점기준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 분	신 청 자 격
우주택기간 적용 기준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자가주택 소유자를 우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자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자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 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우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우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우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우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우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우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우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 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상기 기재사항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우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우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해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함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소유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우주택으로 인정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우주택자이므로 우주택기간 점수는 0점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공유자분 소유자 및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 가호와 제 나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가)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나)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다)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인이 되어 있는 서류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마)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주택 소유자는 제외
-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써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 수도권내는 1억3천만원이하인 주택(이하“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2007.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세대주 인정기간의 산정에 대한 유의사항
 - 가)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주민등록주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 나)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 ①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 ②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③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일반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하여야 함.
2. 공통
 -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3.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 ※ 청약자는 입주자선정방법[가점/추첨]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 분류 접수됨
 -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4.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5. 청약 신청접수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인터넷청약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시 입력한(또는 주택공급신청서상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음.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본인의 청약자격(거주기간, 거주개시일, 무주택세대주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전에 정확하게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청약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청약접수 은행 및 당사는 책임지지 아니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계좌로서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분 전체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6. 인터넷 청약 이용방법

구분	전은행 청약통장가입자(www.ap2you.com)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이용대상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 1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하신 분 - 3순위 : 청약신청금 거래계좌를 보유한 분(16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에 접속 > APT청약신청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주택청약>인터넷청약

-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총16개은행)
-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람,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7. 노약자·장애우 등 인터넷 청약자 청구 청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서 (배우자 포함)	1.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청약통장 취급은행 비치) 2. 청약통장(1순위자에 한함) 3.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4. 청약신청증[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5.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6.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1.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①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 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②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③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④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전 본인의 청약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증·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8. 2순위 청약방법 및 청약신청금

- 청약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우 등(인터넷 취약자는 청약자 거래은행 본·지점 에서 현장접수)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신청금

구분	전주택형	창구 청약자 신청금 납부방법
청약신청금	100만원	주택청약(인터넷뱅킹) 참가은행(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에 계좌 개설후 3순위 청약신청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 / 노약자·장애우 등 인터넷 취약자가 청약자 거래은행 본·지점 현장 접수시 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바람.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 환불기간: 당첨자 발표 후 익영업일부터 (평일: 09:00 ~ 16: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 인터넷 청약신청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발표 익일 영업일에 자동 환불됨.
 - 은행 창구 청약자: 청약 접수한 은행 본·지점에서 직접 환불(단, 자동 환불 신청한 분은 당첨자 발표 익일 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 환불시 구비서류
 - 본인·배우자 환불시: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주민등록증, 청약당시 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 환불시: 상기 서류외에 제3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주택청약 신청금 환불 위임용)1부, 인감도장, 위임장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환불 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2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당사건본주택에서는 당첨자만을 선정함.(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일회하여 당사 건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함)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일괄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전산추첨함.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고 미달 물량 발생시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일반공급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전용면적 85㎡이하: 일반공급 40% 가정제, 60% 추첨제로 공급, 전용면적 85㎡초과: 일반공급 100%를 추첨제로 공급)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최초 정당계약체결일 전일까지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연락처를 통보한 예비당첨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인터넷, ARS, 모바일 당첨자발표 이용안내

구분	전은행 청약통장가입자(www.apt2you.com)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인터넷	이용방법: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당첨사실조회→주택별조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주택청약→당첨확인→주택별 조회
	이용기간: 2015.04.30 ~ 2015.05.09 (10일간)	
전화(ARS)	이용방법: 금융결제원 (1369) [서비스코드 : 5#]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이용기간: 2015.04.30 ~ 2015.05.09 (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5.04.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및 분양대금 납부

- 계약기간 : 2015.05.06(수) ~ 2015.05.08(금) (3일간, 시간:10:00 ~ 16:00) (단, 정당 당첨자 기준)
- 계약장소 : 당사 건본주택
- 계약금 납부: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약체결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시행사 및 분양 직원은 수납을 하지 않음)
- 납부계좌안내: 입금계좌는 보람종합건설주식회사와 대한주택보증에서 공동관리하는 계좌입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경남은행	207-0012-3806-06 또는 0552748001	보람종합건설(주)외 1개사

- 위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계약금의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 무통장입금시 계약자(당첨자)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이며, 입금 전 당사 건본주택에 당첨여부 및 계약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입금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계약자의 책임임)
- 각 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시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분양수입금관리계좌의 변경은 대리은행의 승인 하에 대리은행 및 수탁자의 명의로 수분양자에게 통보하여야 가능함..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정당 당첨자 (본인계약체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단,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계약금 입금 확인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정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하며 직계존속초본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부적격 통보 받은자 (당첨자 중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 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건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발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 7. 1 [주민등록비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유의사항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음.
- 각 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가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시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기 청약자격 전산수룩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 등(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청약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룩사항을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을 하시기 바람.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허용범위내의 변동은 상호 정산하지 않으며 허용 범위를 벗어난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키로 함.(단, 소수점 이하 면적증감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면적을 별도로 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명칭, 동번호, 외부마감자재의 종류 및 색상,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각종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면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방법: 주택형별 면적(㎡) ×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각종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 카탈로그, 각종 홍보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단지모형, 각 주택형별 입체평면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정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중앙호흡 및 Computer Graphics(조감도, 위치도, 투시도 등)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기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 및 배수시설, 저수조 등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방식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가구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음.
- 각종 홍보용 자료에 표현된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조권, 조망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별 발코니부위는 드레인 및 선홍통 등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 세대(발코니 비확장세대)의 내부와 발코니 사이에는 PVC 장호가 기본으로 설치되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하는 발코니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확장세대에 있어서 외부발코니창은 방화구역내에 있으므로 알루미늄창+PVC창이 설치됨)
- 거실, 주방, 침실 등에 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로 인하여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천장등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받을 수 있고, 야간경관조명 설치로 인한 전기요금도 상승될 수 있음.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에서 임의로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건본주택 내부를 영상 촬영하여 보관(입주 후 1년)할 예정.
- 출입구 등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으로 인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배치 상 세대 상호간에 향이나 층에 따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 운동시설, 필로티 등의 설치로 소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배치 특성상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동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기타 유사시설로 인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공간이므로 전용화 또는 사유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 사항임.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의 배치, 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황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및 도로, 소음, 일조, 조망, 진입로, 사생활침해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람,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오피스텔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대지 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적합한 세대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차별화 및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입면, 아파트 외벽 문양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추후 변경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 및 지하주차장은 호수별 위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홀까지 동선이 다소 길어 이용에 불편할 수 있고,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호별 사용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 천정에 설치된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건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공사 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환기를 위해 지상에 노출된 환기시설물은 건축물 특성상 필요시설로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형태와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천연대리석 시공부위는 원석을 가공하여 사용하므로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공극, 스크래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당첨자가 분양계약체결 시 건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변경)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함.
- 각종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계약 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업소 등)는 당사와 무관함.
- 사업지 인근의 공공시설물의 개발, 건립 등은 관계기관의 사정 및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 창호는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책상 등), 생활가전류(전자레인지, 냉장고, 밥솥, TV 등),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 등은 연출용임.
- 분양계약체결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각종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및 그림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 계약품목 및 디스플레이 물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임.
- 조경수 식재위치 및 세부식재계획, 보도포장,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입체적 단지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 심의결과, 심의과정 등에 따라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추후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법시행규칙제11조4항에 의거한 경미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시 싱크대하부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고 싱크대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으며, 싱크대 벽면과 세대내부 신발장 및 불박이장등 가구설치부위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정)은 별도마감 없음.
- 외부마감재가 시공된 부분의 비노출부분은 별도의 마감재 시공이 되지 않음.
- 본공사시 옥조의 뒷면과 바닥, 욕실장 뒷면, 욕실 천정상부는 타일취부를 하지 않음.
- 지정금융기관에서 각 주택형별 분양금액 60%의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나, 정부의 정책 및 금융기관 내규의 변경, 사업주체의 사정, 개인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람,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음.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보증수수료 등 제반비용 일체는 계약자의 부담이며, 금융 신용관리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불가한 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 본인이 분양대금을 지정계좌로 현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연체료가 가산됨.
(대출 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은행은 경남은행이며, 대출은행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취사용 가스는 도시가스에서 공급될 예정으로, 도시가스와 관련하여 인허가 협의 조건에 따라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시 해당부지는 영구임대 될 예정임.
- 배치 상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급·배기구,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인접세대는 생활환경이 불편할 수도 있음.
- 세대내 주방 및 욕실에서는 환기시설 설치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창원시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디자인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 시 건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경비실 등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제14의2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적용됨.

▣ 보증회사: 대한주택보증(주)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2412015-104-0000100	6,692,413,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사고의 내용 (제1조 4호)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함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함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제3조)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함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제4조)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보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획(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획을,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획을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획을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획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함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함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흡오도, 발코니사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어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함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청시 「신용정보의이용및보존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2015년 10월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지하기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회 사 명	금 액 (VAT포함)
건 축	솔찬건축사 사무소	27,500,000원
전 기	현대공영(주)	8,250,000원
통 신·소 방	현대공영(주)	10,450,000원

▣ 택지비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및 기관

구 분	면 적	감정기관	감정금액
공동주택아파트부지 (오피스텔부지 제외)	894.4516m ²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1,583,178,465
		㈜가람감정평가법인	1,538,455,909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보람종합건설(주)외 2인	보람종합건설(주)
주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94(뉴올림피아상가 307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94(뉴올림피아상가 307호)
등록번호	경남-주택2013-0045	경남-주택2013-0045

▣ 견본주택 위치: [도로명주소]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8길 47 [지번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38-4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타 및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사 분양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 문의 : 055-297-7844